

의안번호	2213143
의 퇴 인	윤종오의원
회 답 일	2025.11.10.
추계번호	25E52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인하 및 세율 인상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1.5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6년 1.4조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9.9조원(연평균 4.0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안 제55조제1항)	1.4	4.0	4.1	4.8	5.6	19.9	4.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55조 (세율)	○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인하 및 과표 1.5억원 초과구간 세율 인상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과세표준</th></tr> <tr> <th col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안</th></tr> </thead> <tbody> <tr> <td>0~1,400만원</td><td>6%</td><td>0 ~ 1,400만원</td><td>6%</td></tr> <tr> <td>1,400~5,000만원</td><td>15%</td><td>1,400 ~ 5,000만원</td><td>15%</td></tr> <tr> <td>5,000~8,800만원</td><td>24%</td><td>5,000 ~ 8,800만원</td><td>24%</td></tr> <tr> <td>8,800만원~1.5억원</td><td>35%</td><td>8,800만원 ~ 1.5억원</td><td>35%</td></tr> <tr> <td>1.5~3억원</td><td>38%</td><td>1.5억원~3억원</td><td>40%</td></tr> <tr> <td>3~5억원</td><td>40%</td><td>3억원초과</td><td>45%</td></tr> <tr> <td>5~10억원</td><td>42%</td><td></td><td></td></tr> <tr> <td>10억원 초과</td><td>45%</td><td></td><td></td></tr> </tbody> </table> ○ 부칙에 따라, 20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0~1,400만원	6%	0 ~ 1,400만원	6%	1,400~5,000만원	15%	1,400 ~ 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5,000 ~ 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8,800만원 ~ 1.5억원	35%	1.5~3억원	38%	1.5억원~3억원	40%	3~5억원	40%	3억원초과	45%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0~1,400만원	6%	0 ~ 1,400만원	6%																																								
1,400~5,000만원	15%	1,400 ~ 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5,000 ~ 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8,800만원 ~ 1.5억원	35%																																								
1.5~3억원	38%	1.5억원~3억원	40%																																								
3~5억원	40%	3억원초과	45%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5조(세율)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세수효과를 추계하였으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수효과 추계하지 못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근로소득세의 2026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26.2월 예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 양도소득세의 2026년 세수효과는 예정신고 기한을 감안하여 3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현황 자료(과세표준 구간별 100여개 구간 자료)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동 자료는 국세청의 집계자료(aggregate data)이며,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연도 통계자료임(국세청의 내부 자료)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 각각의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합산하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인원은 제외하여 추계
 -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현황 합계를 연간 신고현황으로 전제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수 효과를 추계하지 못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근로소득세

- (향후 5년간 1인당 총급여 전망)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한 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2023년 귀속 기준 1인당 총급여 금액을 도출한 후, 동 금액에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2025.9)을 반영하여 추정
 - 명목임금상승률(%): ('26) 3.2 ('27) 3.3 ('28) 3.3 ('29) 3.3 ('30) 3.3¹⁾
- (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전망) 향후 5년간 1인당 총급여에 과세표준 구간별 2023년 기준 총급여대비 과세표준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 총급여대비 과세표준 금액 비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7%이나, 과세표준 금액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97.9% 수준(2023년 귀속 기준)
- (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 전망, 현행) 1인당 산출세액은 1인당 과세표준에 명목세율(6~45%)를 곱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 현행 = 1인당 과세표준 × 명목세율(6~45%)
- (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 전망,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은 1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이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6~45%)를 곱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 개정안 = 1인당 과세표준 × 개정안이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6~45%)
- (향후 5년간 1인당 세수효과 전망) 1인당 세수효과(결정세액 변화분)는 1인당 산출세액 변화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을 추계한 후, 이를 1인당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은 산출세액 변동에 연동되는 세액공제·감면을 별도로 감안하여 추정
 - － 근로소득세는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 추계시 과표구간별 평균세액공제·감면액 중 54.7%²⁾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 나머지 45.3%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1) 2030년 전망은 없어, 2029년 전망치를 준용

2) 전체 세액공제·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음

- (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전망)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결정세액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
 - 향후 5년간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수는 최근 고물가 시기를 제외한 과거 5년 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인원수 증가율에 따라 세수효과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유의할 필요
- (근로소득세 귀속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중복자 포함)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8.33조원(연평균 1.67조원)으로 추계

[표 2]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조원)

과세표준 구간별 ¹⁾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1.15	1.35	1.60	1.92	2.31	8.33	1.67
0~1,4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00~5,0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0~8,8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800만원~15억원	0.00	0.00	0.00	0.05	0.11	0.16	0.03
1.5~3억원	0.30	0.37	0.46	0.56	0.68	2.38	0.48
3~5억원	0.34	0.41	0.48	0.56	0.66	2.45	0.49
5~10억원	0.34	0.40	0.46	0.53	0.61	2.33	0.47
10억원 초과	0.16	0.18	0.20	0.22	0.25	1.01	0.20

주: 1) 과표구간 구분은 2023년 귀속 기준이며, 1인당 과세표준액이 연도별로 상승함에 따라 차년도로 갈수록, 1인당 과세표준금액은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 있음

- 추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이하 ‘중복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중복자들의 근로소득세 신고분 세수효과를 차감함
 - 근로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예시: 사업소득,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신고 자료에 중복으로 포함
 - 이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분은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며, 추후 종합소득신고시에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만 종합소득세에 산입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복 세수효과는 추후 종합소득세 세수효과에서 차감함

-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 중 종합소득신고자수 비중을 활용하여 중복자 인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신고 인원(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을 대상으로 총세수효과를 추계

나. 종합소득세

- (향후 5년간 1인당 종합소득금액 전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한 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2023년 귀속 기준 1인당 종합소득금액 금액을 도출한 후, 동 금액에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증가율 전망(2025.9)을 반영하여 추정
 - 경상GDP 증가율(%): ('26) 4.1 ('27) 4.0 ('28) 4.0 ('29) 3.9 ('30) 3.9³⁾
- (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전망) 향후 5년간 1인당 종합소득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 2023년 기준 종합소득금액대비 과세표준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 종합소득금액대비 과세표준 금액 비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1%이나, 과세표준 금액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99.1% 수준(2023년 귀속 기준)
- (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 전망, 현행) 1인당 산출세액은 1인당 과세표준에 명목세율(6~45%)를 곱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 현행 = 1인당 과세표준 × 명목세율(6~45%)
- (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 전망,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은 1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이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6~45%)를 곱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 개정안 = 1인당 과세표준 × 개정안이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6~45%)
- (향후 5년간 1인당 세수효과 전망) 1인당 세수효과(결정세액 변화분)는 1인당 산출세액 변화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을 추계한 후, 이를 1

3) 2030년 전망은 없어, 2029년 전망치를 준용

인당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은 산출세액 변동에 연동되는 세액 공제·감면을 별도로 감산하여 추정
 - － 종합소득세는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 추계시 과표구간별 평균 세액공제·감면액 중 57.0%⁴⁾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 나머지 43.0%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전망)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결정세액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

- 향후 5년간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수는 최근 고물가 시기를 제외한 과거 5년 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인원수 증가율에 따라 세수효과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유의할 필요
- 앞에서 추정한 중복자의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를 차감하여 전망

□ (종합소득세 귀속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수효과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1.19조원(연평균 2.24조원)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수효과(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조원)

과세표준 구간별 ¹⁾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1.63	1.90	2.21	2.54	2.91	11.19	2.24
0~1,4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00~5,0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0~8,8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800만원~15억원	0.00	0.02	0.04	0.06	0.08	0.21	0.04
1.5~3억원	0.85	1.01	1.19	1.39	1.60	6.03	1.21
3~5억원	0.60	0.68	0.78	0.88	1.00	3.95	0.79
5~10억원	0.21	0.22	0.23	0.25	0.26	1.17	0.23
10억원 초과	-0.03	-0.03	-0.04	-0.04	-0.04	-0.18	-0.04

주: 1) 과표구간 구분은 2023년 귀속 기준이며, 1인당 과세표준액이 연도별로 상승함에 따라 차년도로 갈수록, 1인당 과세표준금액은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 있음

4) 전체 세액공제·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음

다. 양도소득세

- (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전망) 각 구간별로 양도소득세는 변동이
크에 따라, 2020~2023 귀속연도 평균 기준으로 1건당 과세표준을 도
출한 후, 동 금액에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증가율 전
망(2025.9)을 반영하여 추정
 - 경상GDP 증가율(%): ('26) 4.1 ('27) 4.0 ('28) 4.0 ('29) 3.9 ('30) 3.9⁵⁾
 -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세
수효과 추계

- (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전망) 1건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이 반영된 과세
표준 구간별 명목세율(6~45%)를 곱하여 개정안 전후의 산출세액을 구
하고, 이에 각 구간별 신고건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
 - 양도소득세의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은 국세통계연보의 예정신고와 확정신
고를 합산하여 사용(2020~2023 귀속연도 평균 기준 약 86.6만건)
 - － 향후 1인당 과세표준금액은 경상GDP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 별도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과세표준(주식 양도소득, 고율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⁶⁾)은 제외하고, 동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산출
세액 추계
 - － 별도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비중이 전 과표구간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건당 과세표
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에 따라, 별도세율로 과세되는 주식(27.4%⁷⁾)과 고율과세
대상 자산(11.7%⁸⁾)의 합계(39.1%)만큼 신고건수 및 과세표준이 감소
 - 개정안에 따른 총세수효과(총결정세액변화분)는 총산출세액변화분에서 산출
세액 중 주요 세액공제·감면대상액의 비중을 차감하여 추정
 - － 총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감면항목(8년 이상 자경농민,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
면)의 비중은 2020~2023년 평균, 6.6%

5) 2030년 전망은 없어, 2029년 전망치를 준용

6)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 2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 미등기 양도

7) 총양도소득 대비 주식양도소득 비중, 2020~2023년 평균

8) 총양도차익 대비 고율과세대상 양도차익 비중, 2020~2023년 평균

□ (귀속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효과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26조원(연평균 0.65조원)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효과(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조원)

과세표준 구간별 ¹⁾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0.59	0.62	0.65	0.68	0.71	3.26	0.65
0~1,4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00~5,0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0~8,800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800만원~15억원	0.00	0.00	0.00	0.01	0.01	0.02	0.00
1.5~3억원	0.06	0.07	0.07	0.08	0.09	0.36	0.07
3~5억원	0.14	0.15	0.16	0.17	0.18	0.81	0.16
5~10억원	0.21	0.22	0.23	0.24	0.25	1.14	0.23
10억원 초과	0.19	0.19	0.19	0.19	0.19	0.93	0.19

주: 1) 과표구간 구분은 2023년 귀속 기준이며, 1인당 과세표준액이 연도별로 상승함에 따라 차년도로 갈 수록, 1인당 과세표준금액은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 있음

4. 세수효과 요약

- (귀속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1.5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2026년 3.4조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2.8조원(연평균 4.6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조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3.4	3.9	4.5	5.1	5.9	22.8	4.6
근로소득세	1.1	1.4	1.6	1.9	2.3	8.3	1.7
종합소득세	1.6	1.9	2.2	2.5	2.9	11.2	2.2
양도소득세	0.6	0.6	0.7	0.7	0.7	3.3	0.7

- (징수 기준) 소득세 세목별로 징주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는 2026~2030년 동안 총 19.9조원(연평균 4.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근로소득세의 2026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26.2월 예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2026년 세수효과는 예정신고 기한을 감안하여 3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조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1.4	4.0	4.1	4.8	5.6	19.9	4.0
근로소득세	0.9	1.6	1.6	1.9	2.3	8.3	1.7
종합소득세	0.0	1.6	1.9	2.2	2.5	8.3	1.7
양도소득세	0.5	0.7	0.7	0.7	0.7	3.3	0.7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